

$$116\text{평} \times 2,493,000\text{원} = 289,188\text{천원}$$

• 신축사유

— 현재 사용중인 경로당이 낡은 슬레이트 건물로 지해요인이 상존 다목적 경로당을 건립 노
인 여가선용 장소로 제공함이 판단됨.

부천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

□ 심사경과

1. 심사일정

가. 제안자 : 부천시장

나. 회부일자 : '94. 11. 28.

다. 상정일자 : '94. 12. 13.

라. 의결일자 : '94. 12. 13.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설명자 : 환경보호과장

나. 내 용

폐기물 투기행위와 분리배출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처분절차
의 간소화 및 부과기준 등을 현실에 맞게 부과하고 아울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
한 법률에 의한 과태료 부과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시키고자 함.

3.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 폐기물 무단투기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이 너무 많지 않은지?	○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적 합한 과태료를 산출한 것임.

4. 토론요지

가. 찬성토론

○ 없 음

나. 반대토론

○ '95 1. 1. 쓰레기종량제와 연관되는 조례로서 전 의원 찬성

5. 수정안 내용

○ 없 음

6.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 심사결과 : 원안가결

부천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안

의안번호	326
의 결	94. 12. 21
년 월 일	(제33회)

제출년월일 : 1994. 11. 21

제 출 자 : 부 천 시 장

☐ 제안이유

○ 폐기물 투기행위와 분리배출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처분절차의 간소화 및 부과기준 등을 현실에 맞게 부과하고 아울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과태료 부과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시키고자 함.

☐ 주요골자

○ 폐기물 투기금지 규정의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장소에서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를 발부할 수 있도록 함. (폐기물관리법 제7조, 제15조, 제16조)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6조)
- 과태료 부과금액의 대폭 상향조정으로 현실에 맞도록 보완 (최하 25천원에서 3,000천원까지 부과)

부천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안

제 1 조 (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63조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이하 “과태료”라 한다.)의 부과·징수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과태료는 시장이 부과·징수한다.

제 3 조 (청문) ① 과태료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피처분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이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아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통지서 또는 과태료처분 및 납부통지서에 의견진술기간 및 장소 등을 기재하여 통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태료처분의 효력은 의견진술 기간이 종료된 다음날부터 발생하게 된다.

제 4 조 (과태료 처분통지 등) ① 시장은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피처분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과태료 처분통지서와 별지 제2호 서식의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제7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장소에서 별지 제3호 서식의 과태료처분 및 납부통지서를 발부할 수 있다.

② 과태료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이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납부기간이 지난 날부터 7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한 독촉장을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발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과태료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이를 피처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5 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시장은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 6 조 (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① 시장은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시장은 이를 검토하여 과태료 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별지 7호 서식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었음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결과와 법원에 통보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 7 조 (강제징수) 시장은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지방세 채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 8 조 (과태료의 귀속) 수납되는 과태료는 시의 수입으로 한다.

제 9 조 (과태료 수납부 비치·관리) 시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 10 조 (준용규정)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규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세입징수관 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제 11 조 (권한의 위임) 시장은 이 조례에 의한 권한중 일부를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 12 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에 대한 과태료 처분에 관한 규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었거나 부과하여야 할 과태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별표1)

과 태 료 부 과 기 준

적용법	부 과 항 목	부 과 금 액 (천 원)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이후)
폐기물 관리법	1. 폐기물을 정당한 사유없이 공공지역 또는 공공시설에 버린 자. (법 제7조)			
	가. 별도기구 없이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 (담배꽂초, 휴지 등)을 버리는 행위	25	25	25
	나. 간이보관기구 (비닐봉지, 천보자기 등)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① 10kg 미만	50	50	50
	② 10kg 이상	99	99	99
	다. 휴식 또는 행락중 발생된 쓰레기를 수거하지 아니하는 행위			
	① 10kg 미만	100	100	100
	② 10kg 이상	199	199	199
	라. 차량, 손수레 등 별도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① 1톤 미만	200	200	200
	② 1톤 이상 3톤 미만	300	300	300
	③ 3톤 이상 5톤 미만	400	400	400
	④ 5톤 이상	499	499	499
	마. 사업활동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건축폐재류 등)을 버리는 행위 (폐기물 관리법 제14조 제1항의 다량 배출자 및 동법 제17조 제1항의 일반 폐기물 처리업자는 제외)			

적용법	부 과 항 목	부 과 금 액 (천 원)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이후)
폐기물 관리법	5톤 미만	500	500	500
	① 5톤 이상	1,000	1,000	1,000
	2. 일반폐기물을 종류, 성상별로 분리·보관 하지 아니한 자. (법 제15조 제2항)			
	가. 일반폐기물의 배출 시에 시·구별로 지 정된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 나, 정해진 분리배출방법에 따라 분리 하여 배출하지 아니하거나, 지정된 장 소 및 용기에 배출하지 아니한 경우	100	200	500
	나. 지정된 규격봉투에 일반폐기물을 담아 배출 시에 봉투를 묶지 않고 배출한 경우	50	50	50
	3. 일반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 기준의 준수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명령 을 위반한 자. (법 제16조 제2항)	300	500	1,000
	4. 일반폐기물 처리업자 중 도의 조례로 정 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요금을 받은 자 (법 제17조 제4항)	500	700	1,000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5. 일반폐기물 처리시설의 사용개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법 제20조 제3항)	1,000	—	—
	6. 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록한 자 (법 제41조)	300	500	1,000
	1. 자원재활용촉진을 위한 각종 지침의 준수 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법 제13조 제2항)			
	가. 재활용지정사업자 및 제1종 지정사업 자의 경우	2,000	2,500	3,000

적용법	부 과 항 목	부 과 금 액 (천 원)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이후)
자원의 절약과 촉진에 관한법률	나. 제2종 지정사업자 및 지정부산물 배출 사업자의 경우	1,500	2,000	3,000
	2. 제품의 포장방법 및 재질 등의 기준에 관 한 규칙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 행하지 아니한 자. (법 제15조 제2항)			
	가. 포장공간비율 위반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① 기준보다 25%미만 초과한 때	1,500	2,000	3,000
	② 기준보다 25%이상 50%미만 초과한 때	2,000	2,500	3,000
	③ 기준보다 50%이상 초과한 때	2,500	3,000	3,000
	나. 포장횟수 위반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 행하지 아니한 경우			
	① 기준보다 1회를 더 포장한 때	1,000	1,500	3,000
	② 기준보다 2회를 더 포장한 때	1,500	2,000	3,000
	③ 기준보다 3회 이상 더 포장한 때	2,000	2,500	3,000
	다. 폴리비닐클로라이드를 사용하여 결합 (라미네이션) 또는 도포(코팅)한 포장 재 사용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000	2,500	3,000
	라. 완구, 인형 또는 종합제품의 포장에 발포폴리스틸렌계 포장재 사용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000	2,500	3,000
	마. 가전제품의 포장용 완충재의 감량화 및 회수율 위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000	2,500	3,000
	3. 1회용품의 사용자제 등을 위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법 제15조 제5항)			

적용법	부 과 항 목	부 과 금 액 (천 원)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이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법률	가. 객석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 66제곱미터 미만의 식품접객업소에서 1회용품 사용자제에 ¹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000	2,000	3,000
	나. 객석면적이 66제곱미터 이상의 식품 접객업소 및 집단급식소에서 1회용품 사용자제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500	2,500	3,000
	다. 목욕장에서 1회용품 무상제공억제를 위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① 일일목욕장업(공동탕, 가족탕, 한증막)	1,000	2,000	3,000
	② 특수목욕장업(사우나탕, 터어키탕, 복합목욕탕)	1,500	2,500	3,000
	라. 객실이 30실 이상인 숙박업소에서 1회용품 무상제공 억제를 위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500	2,500	3,000
	① 호텔 및 관광진흥법에 의한 콘도미니엄업			
	② 여관업 및 여인숙업	1,000	2,000	3,000
	마. 백화점, 대형점, 도매센터, 및 쇼핑센터에서 1회용품 사용억제에 대한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500	2,500	3,000
	바. 백화점, 대형점, 도매센터 및 쇼핑센터에서 화장품류 및 세제류를 판매하는 자가 포장용기의 재사용을 위한 협조 사항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000	2,500	3,000

적용법	부 과 항 목	부 과 금 액 (천 원)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이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사. 백화점에서 재활용 제품의 교환, 판매 매장의 설치, 운영에 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000	2,500	3,000
	4. 토지 또는 건물에서 배출되는 일반폐기물 의 재활용 또는 분리보관기준 준수를 위 하여 필요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 한 자.			
	가. 각종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300	500	1,000
	나. 다량배출자로서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800	900	1,000
	5. 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록한 자 (법 제34조 제3항)	300	500	1,000

※ 1. 위반행위가 2이상 일때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한다.

2. 위반행위의 회수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한도에서 산입한다.

3. 영업의 양도, 상속 또는 법인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 상속 또는 합병전에 당해 영업에 행
하여진 처분 (이미 처분기간이 경과한 처분, 처분기간이 진행중인 처분을 말한다.)의 효과를
야수인, 상속인 또는 합병 후 법인이 이를 승계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제 호

받 음 :

제 목 : 과태료 처분통지

1. 귀하께서는 다음과 같이 법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위반한 사실이 있습니다.

가. 위반일시 :

나. 위반내용 :

2. 위의 위반사실에 대하여 법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니 년 월 일까지 에 납부 하시기 바랍니다.

3.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첨 부 : 과태료 납부통지서 1부.

년 월 일

부 천 시 장 (인)

[별지 제2호 서식]

과태료납부통지서

(개인통지용)

제 호	회계년도	199	년도
세입과목			
납 부	성명		
의무자	주소		
과태료금액		원	

위의 과태료는 법 제 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었으
니 년 월 일 까 지
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부 천 시 장 (인)

과태료납부서

(수납은행 보관용)

제 호	회계년도	199	년도
세입과목			
납 부	성명		
의무자	주소		
과태료금액		원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수납날짜도장

(인)

영수필통지서

(부천시 통보용)

제 호	회계년도	199	년도
세입과목			
납 부	성명		
의무자	주소		
과태료금액		원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수납날짜도장

부천시장귀하

영 수 증

(개인통지용)

제 호	회계년도	199	년도
세입과목			
납 부	성명		
의무자	주소		
과태료금액		원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수납날짜도장

취급자인

380mm×180mm
(인쇄용지 폭급 34E/m²)

[별지 제3호 서식]

(감)

(처분기관 보관용)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

발행번호	제	호	회계년도		세입과목		계좌번호	
위반행위자	성명		주소					
과태료금액			원	납부기간	까지	납부장소		
위반사실	일시		내용					
위반법률	폐기물관리법 제	조	발부일자			의견진술기간		
위반행위자성명			주민등록번호			단속공무원확인		

※ 특기사항

168mm × 118mm

(인쇄용지[특급] 34g/m²)

※ 표의 뒷면부분에 복사용 먹지를 부착 인쇄.

[별지 제3호 서식]

(을)

(피처분자 통지용)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

발행번호	제	호	회계년도	세입과목	제과번호
위반행위자성명	주소				
과태료금액	원		납부기간	까지	납부장소
위반사실일시	내용				
위반법률	폐기물관리법	제	조	발부일자	의견진술기간
위반행위자성명			주민등록번호	단속공무원확인	

1. 위의 위반사실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 제63조에 의거 위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니 지정된 기간 및 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 위반사실에 의견이 있을 경우 위의 의견진술기간까지 처분기관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과태료 처분의 효력은 의견진술기간이 종료된 다음날부터 발생합니다.
3.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의견진술기간이 종료된 다음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부 천 시 장 (인)

168mm × 118mm

(인쇄용지[특급] 34g/m²)

※ 표증 발행번호, 회계년도, 세입과목, 제과번호, 위반행위자, 과태료금액, 납부기간, 납부장소란의 뒷면에 복사용 먹지를 부착 인쇄.

※ 2,3번의 밑줄친 부분에 피처분자가 명백히 알수 있도록 랑은 글씨체로 인쇄.

(별)

(수납은행 보관용)

과 태 료 납 부 서

발행번호	제	호	회계년도		세입과목		계좌번호	
납부인명	성명			주소				
과태료금액			원	납부기간	까지	납부장소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수납날짜도장

부 천 시 장 (인)

168mm × 115mm

(인쇄용지[특급] 34g/m²)

※ 표증 발행번호, 회계년도, 세입과목, 계좌번호, 납부의무자, 과태료금액, 납부기간, 납부장소란의 뒷면에 복사용 먹지를 부착 인쇄.

(개인 통지용)

수 영 부 노 태 과

발행번호	제	호	회계년도		세입과목		계좌번호	
납부의무자	성명		주소					
과태료금액			원	납부기간		까지	납부장소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 납 은 행:								
수납납자도장								취급자인

(인쇄용지[특급] 34g/m²)
168mm × 118mm

※ 표중 발행번호, 회계년도, 세입과목, 계좌번호, 제좌번호, 납부의무자, 과태료금액, 납부기간, 납부장소란의 뒷면에 복사용 먹지를 부착 인쇄.

(무)

(시·군·통보용)

과태료납부영수필통지서

발행번호	호	제	호	회계년도		세입과목		제작번호	
납부의무자	성명				주소				
과태료금액		원			납부기간	까지	납부장소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수납날짜도장

부 천 시 장 귀 하

168mm×118mm

(인쇄용지[특급] 34g/m²)

[별지 제4호 서식]

제 호 과태료 납부 독촉장			
납 부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의무자	③주소		
④과태료납부통지서번호			
⑤ 위 반 사 항			
⑥ 과 태 료 금 액		⑦당초납부기일	

위의 과태료 금액이 채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
시기 바랍니다.

위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채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하게 됩니
다.

년 월 일

부 천 시 장

인

210mm × 297mm

(신문용지 54g/m²)

[별지 제5호 서식]

제 호

과태료부과취소(변경)통지서

주 소 :

성 명 : 귀하

① 고 지 금 액	② 취 소 (변 경) 액	③ 차 액	비 고

취소(변경)사유 :

년 월 일

부 천 시 장

인

210mm×297mm

(신문용지 54g/m²)

[별지 제6호 서식]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서

신 청 인	① 성 명 (한자)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과 태 료 처 분 내 역	④ 부과기관		⑤ 납부통지서번호
	⑥ 고지받은날짜	⑦ 과태료금액	
	⑧ 과태료처분사유		
⑨ 과 태 료 처 분 에 대 한 불 복 사유			

법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장 또는 서명)

부 천 시 장 귀 하

210mm×297mm

(신문용지 54g/m²)

[별지 제7호 서식]

제 호

수 신

발 신 : 부 천 시 장 (인)

제 목 :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 통보

1. 법 제 조와 관련됩니다.

2. 법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을 한 바, 본인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이의 제기가 있으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과태료 재판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처분에	① 성 명 (한자)	③ 주민등록번호	
대한이의제기자	② 주 소		
과 태 료	④ 고 지 일 자	⑥ 과 태 료 금 액	
처 분 내 역	⑤ 부 과 기 간	⑦ 이 의 제 기 일 자	

첨 부 : 1. 과태료 처분 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

210mm × 297mm

(신문용지 54g/m²)

[별지 제8호 서식]

과태료수납부

① 일련 번호	② 통지 번호	③ 서 호	④ 과태료처 분통지일	⑤ 장 부 일	납부기한		⑦ 액 금	납부의무자			⑩ 과 태 료 납 부 일	이의제기	
					⑤ 당 초	⑥ 득 축		⑧ 성 명	⑨ 주 소	⑪ 이 의 제 기 일		⑫ 법 원 통 보 일	

210mm × 297mm

(신문용지 54g/m²)